

---

## II.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내용

---

본 장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의 의미, 모집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 또한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와 구분될 수 있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규정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 1. 보험 모집 행위

#### 가.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의 의미

보험업법은 “모집”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여기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는 보험대리점 등 대리인이 본인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고 그 경우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보험회사에 직접 귀속된다.<sup>6)</sup>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의미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로서 그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할지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sup>7)</sup>

---

6) 정찬형(2007); 한기정(2017); 정채웅(2017); 성대규·안종민(2015)

7) 이성남(2017)

중개 행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상법상 중개 행위에 대한 해석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상법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하고(상법 제87조),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고 하는데(상법 제93조), 위 조항에서의 ‘중개’의 의미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중개란 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그들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행위로서, 이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히 당사자 일방에게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문서화하는 단계에서 계약서의 작성만을 대행해 주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sup>9)</sup>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중사자가 보험 모집의 각 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 모집의 단계를 ①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② 보험계약 청약 단계, ③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단계, ④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표 II-1〉 보험 모집 단계별 제공 서류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설명서</li> <li>•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경우 변액보험운용설명서</li> </ul>
보험계약 청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청약서 부분</li> <li>• 보험약관</li> </ul>
보험회사의 승낙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증권</li> </ul>
보험계약 유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변액보험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의 보험의 경우 연 1회 이상)</li> </ul>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8) 민법에서는 중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2013년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에서는 민법상 계약의 유형의 하나로 중개계약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개에 대해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체결의 기회를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알선할 것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개정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음

9) 이철송(2016); 손주찬(2007)

## 나.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에 대한 규제 내용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83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sup>10)</sup>

이와 같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에게나 보험 모집을 허용할 경우 보험 모집을 빙자한 사기 행위 또는 보험료 횡령 행위가 빈발할 수 있고 보험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보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sup>11)</sup>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집 행위를 하는 본인을 규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이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보험업법 제99조).

그 밖에도 보험업법은 모집종사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며, 불공정한 거래 및 과당경쟁을 막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sup>13)</sup> 예를 들어, 보험업법은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95조),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보험계

10)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위탁되어 있음(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194조)

11) 정찬형(2007); 이성남(2017)

12) 정찬형(2007)

13) 이성남(2017)

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5조의2). 또한 모집종사자가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 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이른바 승환계약),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8조).

## 2. 모집 광고 행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

우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광고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지급한도·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등). 또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 한도나 면책사항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행위, 보험료를 일괄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자동갱신상품에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글씨의 크기나 음성의

강도·속도(예: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 음성의 강도·속도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 음성의 강도·속도가 비슷해야 함) 등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해당 광고가 보험업법상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상품광고,<sup>14)</sup> 판매방송<sup>15)</sup>에 대해 협회 내의 기관인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보험업법에서는 광고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라 함은 사업자들이 사업자 자신이나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 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데(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2항),<sup>16)</sup> 여기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보험 상품의 필요성 환기, 보험 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보험 상품의 가격

14)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 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가목,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가목)

15)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흡소핑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나목,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나목)

16) 광고에 보험회사와 보험 상품의 명칭, 지급한도·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면 됨

특성 및 보상 품질, 보험 상품 보장내용의 특징, 보험 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면서 영상·음성 광고의 경우 1분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3항).<sup>17)</sup>

만약 보험 상품의 필요성 환기, 보험 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보험 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보험 상품 보장내용의 특징, 보험 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정도에도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이름이나 보험 상품의 명칭, 브랜드 명칭만을 노출하는 수준의 광고라면, 이는 보험업법상 모집 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는 보험 상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

보험업법은 비교·공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4조 제2항).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24조 제4항).

위 보험업법 조항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비교·공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5항에서는

17) 한편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제외됨(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4항)

보험협회,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자를 “보험 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고 칭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보험협회는 보험 상품 비교·공시기관이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비교·공시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에서는 보험 상품 비교·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 상품 비교·공시기관은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 비교·공시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를 해야 한다.

〈표 II-2〉 보험협회 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에 대한 규제

<p>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비교·공시의 경우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비교·공시할 것</li> <li>•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li> <li>•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협회의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할 것</li> </ul>
<p>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비교·공시의 경우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li> <li>•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li> <li>•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li> <li>•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li> <li>•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li> <li>•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비교·공시할 것</li> </ul>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

18) 2016. 4.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외의 자의 비교·공시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신설함. 이는 보험료 관련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협회의 비교·공시사이트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보험 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인터넷 포털 등에 개방하여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인터넷 포털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 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 10. 16),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 4. 상담 또는 소개 행위

보험업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sup>19)</sup>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이른바 방카슈랑스)을 허용할 당시, 기존의 보험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영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을 허용은 하되 다만 그 영업 방법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것만 가능하며,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sup>20)</sup>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sup>21)</sup>의 범위 내에서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에게만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고(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소속 임직원이 아닌 사용인을 두고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 5. 소결

이처럼 보험업법에서는 모집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모집 행위와 구분되는 행위 유형으로 모집 광고 행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

19) 다만 신용카드업자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예외(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0)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것이 허용됨(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단서)

21)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함

위가 있으며, 상담 또는 소개 행위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법에서 규제하는 모집 광고 행위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로서 적어도 보험 상품 보장 내용의 특징이나 보험 상품의 가격 특성 등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단순히 보험회사명, 보험 상품명 또는 브랜드명 등만 노출하고 홍보하는 수준의 광고라면 보험업법이 전제하는 보험 상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바와 같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보험 상품 비교·공시기관), 이러한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의 경우에는 비교·공시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면 될 것이며 모집 행위 규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험업법규에서는 모집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비교·공시의 경우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과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22)</sup> 이는,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그것도 비교·공시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천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만약 보험업법규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교·공시의 경우(예: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만 비교·공시하거나 비교·공시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천이 개입되는 경우)라면, 특정 보험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에 관한 조항에서는 상담 또는 소개라

22)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보험 상품 공시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상담 또는 소개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로서 사용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담 또는 소개라는 용어를 모집이라는 용어와 구분하여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거나 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단순한 상담 또는 소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단순한 상담 또는 소개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sup>23)</sup>

---

23) 이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중 소개·추천 행위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음